#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영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361 발의연월일: 2022. 7. 7.

발 의 자 : 윤영찬ㆍ이원욱ㆍ이용빈

강병원 · 임호선 · 박광온

조승래 · 한준호 · 전혜숙

김영진 · 최인호 · 이장섭

정필모 의원(13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·변조·표절하는 행위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리고 부정행위를 한 연구개발기관, 연구책임자, 연구자, 연구지원 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가하 는 등의 제재처분을 한 후 이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,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, 대통령령에서는 5년 이상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 제한이나 제재부가금이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 의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연구윤리를 바로 세우고 공정한 연구환경을 만들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모든 제재처분을 공개하도록 하여 국가연구개발활동에서의 연구윤리를 확립하려는 것임(안 제33조).

#### 법률 제 호

##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7항 중 "등록하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"를 "등록·공개하여야"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부정행위 등의 제제처분 공개에 관한 적용례) 제3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제재처분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3조(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	제33조(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
토 요청 등) ① ~ ⑥ (생 략)	토 요청 등) ① ~ ⑥ (현행과
	같음)
⑦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	⑦
제5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	
통합정보시스템에 <u>등록하고, 대</u>	등록·공개
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	<u>하여야</u>
하여는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	
하여야 한다.	
⑧ (생 략)	⑧ (현행과 같음)